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순우 의원 발의】



2025. 03. 24.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88호로 2025년 3월 10일 이순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가. 정월대보름은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로서, 다양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온 중요한 행사임.

나. 영등포구에서도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음.

다. 이에 따라,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예산 지원 및 신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민속행사 실시방법 (안 제5조)

라.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6조)

마. 지도 및 감독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3.12.~2025.3.1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보름날에 행하는 여러 가지 풍속들¹⁾ 덕분에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우리 구(區)에서도 안양천 둔치 등 각 동에서 달집태우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전통 민속 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됨.

1) 대보름날에는 절식으로써 약밥·오곡밥, 묵은 나물과 복쌈·부럼·귀밝이술 등을 먹으며, 기풍·기복행사로써 벼가릿대 [禾竿] 세우기·복토(福土)훑치기·용알뜨기·다리밟기·나무시집보내기·백가반(百家飯)먹기·나무아홉집하기·곡식안내기 등을 행한다. 또한, 이날 행하여지는 농점(農點)으로서는 달집태우기·사발제점·그림자점·달불이·집불이·소밥주기·닭울음점 등이 있다.

이날 행해지는 제의와 놀이로서는 지신밟기·별신굿·안택고사·용궁맞이·기세배(旗歲拜)·귀불놀이·사자놀이·관원놀이·들놀이와 오광대탈놀이 등이 있다. 그리고 이날에는 고싸움·나무쇠싸움 등의 각종 편싸움이 행하여지고, 제웅치기·나무조롱달기·더위팔기·개보름쇠기·모기불농기·방실놀이·뱀치기 등의 액막이와 구충행사(驅蟲行事)도 행하여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보름 [上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목적, 안 제2조에서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민속행사 지원 관련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행사 실시 방법 및 협조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예산 지원 시 지도·감독 규정을 두어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예산 지원 및 신청

제 정 안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민속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윷놀이, 연날리기,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쥐불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 2.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 행사 3. 강강술래,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그 밖의 민속행사와 부대행사
제4조(지원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민속행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행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 직능단체 2.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 안 제3조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된 민속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신청 가능 단체를 규정하고 지원 신청 시 행사계획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였음.

다. 실시 방법 및 관계부서·기관의 협조

제 정 안
제5조(실시방법) 민속행사는 원칙적으로 동별로 실시하되, 각 동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합동행사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민속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은 행사장 안전 점검, 시설정비, 홍보, 질서 유지, 긴급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동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하나 구 합동행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행사의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계부서 및 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음.

라. 지도 및 감독

제 정 안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또한 안 제7조는 안 제3조에 의거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됨.

○ 종합의견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2)에 의거 “전통문화”란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나. 전통생활양식: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이에 “전통놀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윷놀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 각종 민속놀이)가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³⁾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임.

- 또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예산의 지원 등 기반 조성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짐.
- 아울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전통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속놀이 등 행사를 통하여 동 직능단체와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구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3)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1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나. 전통생활양식: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거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